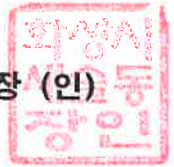
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4일

새 솔 동 장 (인)



1. 공고기간 : 2025. 3. 17. ~ 2025. 4. 7. (21일간)

2. 공고대상 및 사유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김○연	2008.03.17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2	이○진	2008.03.18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3	이○성	2008.03.28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4	오○빛	2008.03.02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5	김○엽	2008.03.12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6	유 ○	2008.03.02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7	박○원	2008.03.24.	2025.04.01. ~ 2026.03.31.	폐문부재

3. 안 내

가.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, 사진 1매(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.5cm * 세로 4.5cm 탈모 상반신 사진)를 지참하고 발급기간 안에 전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솔동 주민등록증 담당(031-5189-69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